

2017 No.3 **e 연구리뷰**
E-2R/E-Research Review

산업안전보건법령 입법체계 정비에 관한 쟁점

02p 연구배경

연구기간 / 핵심단어 / 연구과제명 / 연구배경

03p 주요연구내용

연구결과 / 시사점

04p 연구활용방안

제언 / 개선방안 또는 정책방안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법령 입법체계 정비에 관한 쟁점

연구기간 2016년 1월 ~ 2016년 11월

핵심단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규칙, 법령체계, 위임입법

연구과제명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01 연구배경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의 상·하위규정 간 위임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전문적·기술적인 내용이나 어려운(전문) 용어들로 인해 법해석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상 적용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

02 주요 연구 내용

연구결과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안전영역과 보건영역을 통합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법령조문의 상당수가 안전영역과 보건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현행 법령체계는 안전과 보건으로 법령의 장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잦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으로 추가조문으로 구성되거나, 보칙¹⁾에 실제규정이 들어가 있는 등 법령체계의 오류(위임의 근거 등)와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
- 따라서 안전영역과 보건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공통(통합)적용 되는 것을 전제한 주요 콘텐츠별 법령의 장을 다시 구분하고 필요시 절로 재구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 참고 - 절? 절? 법령은 편-장-절(조-항-호-목)의 순서로 구성되며, 보고서 등을 쓸 때 1. (1), 1) 등으로 항목을 구성하는 것과 비슷함
- 도입에 관한 규정은 하나의 절로 재구성하는 인을 제시하였고, 현행 「근로자 보건관리의 장」을 「근로 환경의 개선²⁾」이라는 절로 변경하는 제안을 하였음
- 산업현장을 안전영역과 보건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콘텐츠

1) 법령의 총칙과 실제 규정에 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절차적·기술적·보충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들을 말함
2)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목적 내에 제정한 직장환경의 형성이 포함

중심으로 해당 조문을 재구성한다면 현장에서의 활용성과 적용성이 높아질 수 있음

- 하위규정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은 1990년 7월 23일 제정 시행되었고, 2016년 6월 현재 전부개정, 일부개정 등 총 24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총칙(제1편), 안전기준(제2편), 보건기준(제3편) 총 671개 조문(가지조문 4개 별도)으로 구성되며, 그 대부분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와 제24조에서 수권³⁾을 받은 것임
 - 제1편 총칙과 제2편 안전기준은 대부분 법 제23조에서 수권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3편 보건기준은 대부분 법 제24조에서 수권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문마다의 위임 근거의 명시가 대부분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이 규칙을 적용받는 현장에서 위반할 경우 위임근거 규정에 따라 법률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등의 부과기준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음

[표]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법령 위임입법체계 현황 분석 통계

구분기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위임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0	0	10
위임법위 일탈	0	1	4
포괄적 재위임	0	1	0
행정입법 부작위	0	2	0
내용의 불합리성 또는 알기 쉬운 법령으로 수정대상	12	5	4
법률체계의 부적합	2	1	29

- 위임근거가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24조의 위임을 받은 조문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편성하여 재구성
- 안전보건규칙의 목적조항은 법률 제23조, 제24조의 위임을 받은 사항만으로 재구성

시사점

- 최근 법령정비의 기준을 살펴보면, 수요자 중심(법령의 이해도와 해석 등)의 법령으로 입법하여 제공하는 것이며, 현재 안전보건규칙상 어려운 용어 또는 다의어⁴⁾를 한자(원어) 병기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수범자의 법령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가 가능하다면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되, 용어 순화가 어렵다면 최소한 한자(원어) 병기를 함으로 수급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정비의 필요성은 지적되어 왔으나,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산업안전보건

3) 수권 :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의미
4) 다의어 :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

- 법령 체계 정비를 위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올바른 입법기준과 정확한 법집행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 오래된 또는 불명확한 용어의 정비 등 현상적용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03 연구 활용 방안

제언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정비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 사업장 등의 현장에서는 향후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함
- 오래된 또는 불명확한 용어의 정비 등 현상적용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개선방안 또는 정책방안

-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작업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장기 정비방안과 단기 정비방안으로 구분하여 시급한 영역은 단기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면서 점차적으로 개정해 나갈 것을 제안함

연구담당자 연락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조흥학
- ☎ 052) 703, 0831
- E-mail hmhak@kosha.or.kr